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9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4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9873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방호, 한정이

변론 종결 2023. 5. 10.

판결 선고 2023. 7. 12.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1. 1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1. 7. 접수 제318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전자 및 자동차 부품업체, 패션 액세서리 업체 등에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전자 부품 제조업, 소형정밀 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B와 사이에, ① 2015. 4. 24. 보증기한 2016. 4. 22.(그 후 2022. 4. 15.까지 연장),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5. 4. 30. 보증기한 2016. 4. 29.(그 후 2022. 4. 22.까지 연장), 보증금액 5억 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6. 4. 21. 보증기한 2017. 4. 19.(그 후 2022. 4. 15.까지 연장), 보증금액 3억 8,250만 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④ 2018. 4. 13. 보증기한 2019. 4. 12.(그 후 2022. 4. 8.까지 연장),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C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⑤ 2020. 4. 17. 보증기한 2025. 4. 16., 보증금액 4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B은 2022. 2. 10.경 중소기업은행과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22. 5. 17.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627,593,396원을, 2022. 5. 23. C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430,419,040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2,872,52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313,437원이다.

(3) 원고는 B 및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구상금 등 2,066,486,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2차전10799호 사건), 위 법원은 2022. 7. 1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22.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물품공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B에게 30여 년간 황동, 인청동 등 비철금속 원자재를 공급해왔다.

(2) B은 2021.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22. 1. 7.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1. 7. 접수 제3187호로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6,2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상무이사인 E은 아버지인 F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피고의 무담보 거래 축소, 시설 투자, 조직 효율화 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B은 2015. 4. 24.부터 2020. 4. 17.까지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B은 2022. 2. 10.경 중소기업은행과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22. 5.경 중소기업은행, C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B을 상대로 구상금 2,066,486,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5.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적극재산은 6,156,198,780원이고, 소극재산은 11,502,011,2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B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5,809,336,380
2	화성시 G, H	43,982,400
3	수직사출성형기 등 기계기구	302,880,000
	합계	6,156,198,780

1	원고에 대한 구상금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무가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B의 소극재산이 된다.	2,058,012,436
2	기업은행 경매청구액	5,640,000,000
3	피고의 배당요구액	1,760,626,810
4	I은행의 배당요구액	543,371,974
5	J유한회사	1,500,000,000
	합계	11,502,011,220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② B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B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피고로부터 30여 년간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까지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④ B은 자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의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 14 내지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이 2020. 11. 7. 피고의 상무이사에 취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인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2. 1. 초순경에도 B에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납품한 사실, ③ 피고가 2022. 1. 28. B에 위와 같이 납품한 자재 중 112,757,693원 상당의 자재를 회수한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도 그 무렵인 2020. 12. 16. K회사 L과 기계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받고, 2021. 8. 23. 위 K회사 L의 배우자 M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3. 28. N회사 O와 기계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받고, 2022. 4. 6. P회사 Q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4. 6. R회사 S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거래처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2,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20. 11.경부터 구리를 포함한 국제 비철금속 시세가 급등하였고, 구리를 원료로 제조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B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21. 1. 초순경 약 12억 원이었으나, 2021. 12. 초순경에는 약 2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B의 피고에 대한 액면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포함하면 약 24억 원이다).

② 피고는 2021. 8.경 물품대금 확보를 위해 B에 대해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B은 '물품을 주문한 원청과 가격인상을 협상 중이며, 기존에 납품한 물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원청으로부터 약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면 위 미수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1. 말경 B에게 재차 미수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③ B은 피고와 30여 년 간 계속적으로 물품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한 바 없었으나, 2021.경부터 위와 같이 미수채권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장 상황,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동,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의 재정 악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B은 2021.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7. 피고에게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직후인 2022. 1. 중순경 원청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해 제공받은 금형을 원청에 반환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정해진 채권최고액 3,006,25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미수 물품대금 등 채권액 약 22억 7,0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액의 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주로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위와 같이 B에 2022. 1. 중순경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B으로부터 2021. 12. 10.부터 2021. 12. 31.까지 합계 597,143,627원의 외상대금을 회수한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맹준영

판사홍연경

판사임정빈

별지

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무가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B의 소극재산이 된다.